

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	2006. 11. 14	조례 제1473호
전부개정	2011. 12. 30	조례 제1826호
일부개정	2012. 9. 18	조례 제1881호
일부개정	2013. 10. 8	조례 제1955호
일부개정	2014. 8. 22	조례 제2010호(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5. 4. 3	조례 제2058호
일부개정	2016. 1. 1	조례 제2150호(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7. 11. 10	조례 제2309호
일부개정	2018. 11. 7	조례 제2416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21. 3. 12	조례 제2718호
일부개정	2022. 3. 2	조례 제2848호
일부개정	2023. 3. 10	조례 제293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〈개정 2018. 11. 7, 2023. 3. 10〉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8. 11. 7, 2023. 3. 10〉

1. “희생·공헌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 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 - 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 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2. “국가보훈 대상자”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보훈단체”란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.

4. “국가보훈 관계 법령”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
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2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8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9. 「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·감독을 받는 단체

[전문개정 2023. 3. 10]

제4조(책무) ①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10>

② 모든 시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10>

[제목개정 2023. 3. 10]

제5조(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1. 7, 2023. 3. 10>

1. 주요 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2.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
3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 게재
4.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 소개
5. 보훈대상,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,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, 명절 등에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·격려
6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·재정적 지원
7.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

[제목개정 2018. 11. 7]

제6조(보훈단체 예산 지원)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
2. 호국·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또는 전적지에 대한 순례비 등의 예산
3.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

[제목개정 2018. 11. 7]

제7조(복지지원 등)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1. 7>

제8조(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)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,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 10. 8, 2015. 4. 3, 2017. 11. 10, 2018. 11. 7, 2021. 3. 12, 2022. 3. 2, 2023. 3. 10>

1. 보훈명예수당·참전명예수당(이하 “명예수당”이라 한다): 매월 10만원
2. 희생·공헌자 사망위로금: 15만원
3.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: 매월 10만원

제9조(지급 대상자) ① 제8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

주하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. <개정 2018. 11. 7>

②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·공헌자 중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1. 7>

[제목개정 2018. 11. 7]

제10조(수당 등의 신청) 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 등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3. 10>

③ 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유가족으로 한다. 다만, 유가족이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로 한다. <신설 2023. 3. 10>

④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급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를 준용한다. <신설 2023. 3. 10>

제11조(지급 결정 및 지급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하며, 다음 달 20일에 신청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. <개정 2012. 9. 18, 2018. 11. 7>

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1. 7>

[제목개정 2018. 11. 7]

제12조(수당의 지급 중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
는 수당 등 지급을 중지한다.

1.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·군·구로 전출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
2.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

[전문개정 2023. 3. 10]

제13조(환수 조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.

1. 수당 등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
2. 수당 등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
3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 받은 경우

[전문개정 2023. 3. 10]

제14조(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 관리) 시장은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1. 7>

[제목개정 2018. 11. 7]

제15조(민간의 참여 조성) 시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18. 11. 7]

제16조(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시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1. 7>

[제목개정 2018. 11. 7]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2011. 12. 30 조례 제1826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당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「광명시 참전유공자 지

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참전명예 수당 신청자는 이 조례에 의한 보훈명예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)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전까지는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부칙 <2012. 9. 18 조례 제188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10. 8 조례 제1955호>

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8. 22 조례 제2010호,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4. 3 조례 제2058호>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. 1 조례 제2150호,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1. 10 조례 제2309호>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11. 7 조례 제2416호>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3. 12 조례 제2718호>

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3. 2 조례 제2848호>

이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3. 10 조례 제293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18. 11. 7>

<input type="checkbox"/> 보훈명예수당				지급 신청서(제10조 관련)		처리기간
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						15일
신청인	성 명		지급대상유형 (보훈번호)			
	주민등록번호					
	주 소					
	연 락 처					
예금계좌		예금주	은행명	계좌번호		
「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(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) 지급을 신청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광 명 시 장 귀하			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		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구비서류 1.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신분증, 유공자증 포함) 1부. 2. 참전유공자 확인서(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) 3. 혼인관계증명서(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) 4. 신청인 통장 사본 1부.					수수료	
					없 음	

[별지 제2호 서식] <개정 2018. 11. 7>

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(제10조 관련)				처리기간
				10일
수 급 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	사망일자			
	지급대상유형 (보훈번호)			
신 청 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(전화번호:)		
	수급권자와의 관 계			
	지급기관 (예금계좌)			
<p>「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광 명 시 장 귀하</p>				
<p>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</p>				
구비서류 1.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3. 신청인 통장 사본 1부.				수수료 없 음

[별지 제3호 서식] <개정 2018. 11. 7>

관 리 대 장(제14조 관련)

○ 보훈명예 수당 지급대장

지급 일시	지 급 대 상 자				지 급 내 역		
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연락처	금액	은행명	지급계좌

○ 사망위로금 지급대장

지급 일시	지 급 대 상 자				지 급 내 역		
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연락처	금액	은행명	지급계좌